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) 관련 수가 적용 질의응답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호 및 9호 관련, 2018.1.23.적용)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3호 관련, 2021.1.1.적용)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호 관련, 2021.2.1.적용)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97호 관련, 2025.1.1.적용)

※ 추가·변경사항은 밑줄 표시

1. 수가 산정

연번	질의	답변
1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)의 병원 및 의원의 범위는?	○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의 병원 및 의원을 의미함. (치과의원, 한의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은 해당하지 않음) 다만,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함.
2	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한지?	○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.
3	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?	○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의료기관을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 한함.
4	고혈압·당뇨·결핵 <u>·우울증</u> <u>·조기정신증</u> 모두 의심자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지?	○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을 따르며,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음. 고혈압·당뇨·결핵 <u>·우울증·조기정신증</u> 중 2가지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됨.

연번	질의	답변
5	의료질평가지원금(상급종합 병원, 종합병원), 전문병원 관리료,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지?	○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가능한 전문병원관리료,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 1회 적용함 (2021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).
6	결핵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중 누600 관찰판정-현미경 또는 누601가 특수배양-항산균 배양 및 동정의 3회 이내의 의미는?	○ 결핵진료지침에서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최소한 2회, 가능한 3회의 도말 및 배양검사를 시행토록 권고하는 바,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누600에 대하여 3회 이내, 누601가에 대하여 3회 이내 본인부담을 면제함.
7	본인부담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	 ○ 고혈압·당뇨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'18년 1월 23일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'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함. ○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'2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. ○ 우울증·조기정신증 진료 및 검사 관련 본인부담 면제는 '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.
8	날짜를 달리하여 결핵 확진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면제 여부는?	○ 일반건강검진 폐결핵 질환의심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, 첫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함.

2. 청구 방법

연번	질의	답변
1	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특정기호 기재방법은?	○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"MT002" 란에 특정기호 "F022" 기재함. - 차상위 환자(공상 등 구분 C, E, F 해당)의 경우에도 특정기호 "F022" 기재 * F022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)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
2	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의료질평가지원금 (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), 전문병원 관리료,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분리청구 하는지?	○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'F022'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.
3	본인부담 면제 대상자(F022)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?	○ 본인일부부담금은 "0"를 기재하며, 청구액은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금액을 기재함.
4	당일 고혈압·당뇨병·결핵 · <u>우울증·조기정신증</u> 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이나, 추가 검사(HbA1C 등) · 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○ 처방전 발행 및 추가 검사(HbA1C 등)・처치 등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함. * 분리청구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, 내원일수,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
5	타 상병 진료비의 청구방법은?	○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, 상해외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, 총내원일수,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 일수를 기재함.

연번	질의	답변
<u>6</u>	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하여 실시하는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청구 시 특정 내역은?	○ 우울증·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으로 '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' 또는 '아1 개인정신치료'를 산정하는 경역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'JX999(기타내역)' 란에 해당 의심 질환을 기재하여 청구현 - 타 JX999(기타내역)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,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계※ 우울증과 조기정신증 동시인 경우 "/"로 구분하여 기재(예시1) 우울증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청구시 [진료내역] 한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7 01 0001 1 NN003 1 1
		09 01 0002 1 FY753% 1 1 [특정내역] 발생 단위구분 출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X999 우울증 2 0002 JX999 우울증 2 0002 JX999 우울증
		(예시2)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청구 시 [진료내역]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7 01 0001 1 NN005* 1 1 09 01 0002 1 FY753% 1 1 09 01 0003 1 FY755% 1 1 * 관련 급여기준「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」에 따라 아1 개인정신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. [특정내역]
		발생 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X999 우울증/조기정신증 2 0002 JX999 우울증 2 0003 JX999 조기정신증
		(예시3)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검사료만 청구시[진료내역]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09 01 0001 1 FY752% 1 109 01 0002 1 FY754% 1 1[특정내역]발생 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투정내역2 0001 JX999 우울증2 0002 JX999 조기정신증